

의안
번호

40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05호
-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 라. 회부일자 : 2021. 11. 17.

2.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위탁 계약 해지를 요청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변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변경 위탁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온터어린이집 (오정화)	슬샘로5길 92 (정릉3동)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19.01.01. ~ 2023.12.31.	79/61

나.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2022.02. 예정)

다. 위탁사업의 범위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2019.01.01.부터 2023.12.31.까지 5년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내 위치한 온터 어린이집 운영 수탁체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체 변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변경위탁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28p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육분야의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민간위탁 조례」 제7조1)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변경위탁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 접수에 이어 수탁체의 계약 해지요청에 따른 수탁자를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수탁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신중한 검토와 위탁 기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됨.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